

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제공”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을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3.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2호, 2019. 4. 30.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사업의 유형,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해야 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와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17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의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인용하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인용하던 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17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가입자가 6개월”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를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근로자가 6개월”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를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면, 사내 게시”를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